

교직원 연구비 지원 규정

□ 제정 : 2006.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교직원 및 각 부서에 학술연구를 진흥하고 권장 격려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직원 연구비) 교직원의 학술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직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제3조(연구 단위기간) 교직원 연구비에 의한 연구기간은 연구비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4조(연구비 수혜 대상자) ①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각 부서

②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연구비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연구비 수혜자로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된 자와 연구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교직원 연구비 수혜자로서 연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각종 서류를 미제출한 자
3.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체류중인 자

제5조(연구비 수혜의 선정) 해당위원회는 연구비 수혜 후보자(각 부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연구비 수혜자(각 부서)로 심의 예정하며, 총장은 최종 연구비 수혜자(각 부서)를 선정한다.

제6조(연구비의 지급 방법) ① 연구비의 지급은 일시 또는 학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비는 개인(부서장)별 통장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를 지급 받은 자(부서)는 지정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제8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비를 지급 받은 교직원(부서)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총장은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연구결과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지급 받았을 때
5. 동일과제로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제9조(연구비 지급 제한)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한 교직원(부서)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3-9 교직원 연구비 지원 규정

제10조(결과보고) 교직원(부서)은 연구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물의 귀속) 연구수행의 결과물은 본 대학교의 소유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